#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97

발의연월일: 2025. 4. 4.

발 의 자: 민형배·김문수・박수현

황운하 · 김준혁 · 이광희

오세희 • 김영배 • 조계원

박지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 회를 설치·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에 당선된 후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결정된 때부터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범위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 미비를 해소해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 신설).

#### 법률 제 호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대통령 궐위 등에 의한 선거의 당선으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①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의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 개시 후 60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국정인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제17조(대통령 궐위 등에 의한 |
|                    | 선거의 당선으로 임기가 개시   |
|                    | 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
|                    | ①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  |
|                    | 2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의 당  |
|                    | 선인으로 결정되어 「공직선거   |
|                    |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하 |
|                    | 여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
|                    |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
|                    | 기 위하여 임기 개시 후 60일 |
|                    | 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
|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 ② 제1항의 국정인수위원회에   |
|                    |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6조의 |
|                    | 규정을 준용한다.         |
|                    | ③ 제1항의 국정인수위원회의   |
|                    |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
|                    |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